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21
----------	-------

발의연월일 : 2025. 10. 1.

발 의 자 : 임이자 · 안상훈 · 이인선
최보운 · 배준영 · 권영세
서명옥 · 우재준 · 최은석
송언석 · 박대출 · 강승규
추경호 · 김위상 · 이종배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완화, 균형 발전 및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재원으로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정하고, 매년 10조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제주특별계정 등으로의 배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세출예산이 지역자율계정에 지역지원계정보다 많이 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세출예산의 배정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균형 발전 관련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세출예산의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의 배정을 명시하고, 예산 배분 기준에 있어 지역내총생산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차등할 수 있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 국회 결산보고서에 계정별 세입·세출 현황, 전입금 및 융자금 운용 실적, 이월·전용·차입 내역, 집행잔액 및 잉여금 처리 결과, 지역별 사업 집행 내역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국회가 회계의 운용실태를 보다 투명하게 점검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 및 지방 소멸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5조 제3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제78조제1항제1호 개정, 제79조제1항제1호 개정, 제85조 제1항 개정, 제95조 신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에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70을, 제76조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에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30을 각각 배정한다.

④ 세출예산의 자금운영·결산 및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1항제1호 중 “40”을 “60”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1호 중 “60”을 “40”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를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전년도 지역내총생산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으로 한다.

제9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의 국회 보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는 계정별 세입·세출 현황, 전입금 및 융자금 운용 실적, 이월·전용·차입 내역, 집행잔액 및 잉여금 처리 결과, 중앙행정기관별 집행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집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바탕으로 회계의 운용실태를 심사·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회계의 관리·운용) ① · ② (생 략) ③ <u>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제75조(회계의 관리·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76조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에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70을, 제76조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에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30을 각각 배정한다.</u> ④ <u>세출예산의 자금운영·결산 및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u>40</u> 2. ~ 1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 1. ----- -----<u>60</u> 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u>60</u> 2. ~ 11. (생 략)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 -----. 1. ----- -----<u>40</u> 2.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제85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①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u>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 ③ (생략) <u><신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5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① ----- ----- ----- ----- -----<u>기준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전년도 지역내 총생산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 간</u>-----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5조(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의 국회 보고) ① 기획재정부장은 <u>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는 <u>계정별 세입·세출 현황, 전입금 및 융자금 운용 실적, 이월·전용·차입 내역, 집행잔액 및 잉여금 처리 결과, 중앙행정기관별 집행 결과 등이 포함</u>되어야 한다.
--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집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바탕으로 회계의 운용실태를 심사·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